8.4 권총, 손잡이 및 실탄

8.4.1 모든 권총 표준(기준)

8.4.1.1 손잡이

a) 손잡이 및 권총 일부분이 손목을 넘도록 연장 혹은 제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한다. 정상적인 사격 자세를 취하였을 때 손목은 육안으로 확실히 보여야 한다. 이는 선수의 손에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이 육안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손과 총 사이에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풀 혹은 레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초크, 탤컴파우더, 마그네슘 혹은 유사 성분은 허용된다.

권총을 파지하는 손 혹은 팔에 팔찌, 시계, 손목밴드 혹은 이와 유사한 아이템들은 착용할 수 없으며;

b) 위 규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의 손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 가능한 손잡이의 사용은 허용된다. 조정 가능한 손잡이는 규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무작위 장비검사의 대상이 된다.
압축성 물질은 허용되지 않는다

c) 10m 및 25m 권총의 경우 아래의 그림에 허용되는 손잡이 제작이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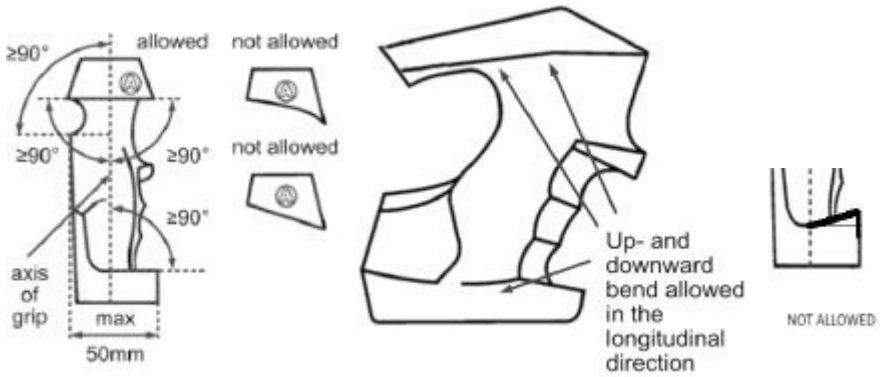

세로 방향으로 상하 구부림 가능

8.4.1.2 조준장치

a) 개방된 조준장치(가늠자와 가늠쇠가 노출된 일반적인 조준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광섬유, 광 증강 혹은 색 표면을 반사시키는 것을 사용한 조준장치는 금지된다. 광학 조준경, 거울, 레이저빔, 전자식으로 투영되는 점이 보이는 조준장치 등은 모두 금지된다.

b) 격발 매커니즘을 작동시키거나 선수가 언제 사격하는지 시그널을 주도록 프로그램된 조준장치는 금지되어 있다(표적을 조준할 때에만 권총이 격발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요소 포함)

c) 개방된 가늠쇠 혹은 가늠자에 보호용 커버 사용은 금지된다.

d) 10m 및 25m 권총은 조준장치가 부착된 채로 규정된 측정박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권총 규격표 8.12 참조)

e) 교정 렌즈 및/혹은 필터가 권총에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f) 교정 렌즈 혹은 안경 및/혹은 필터 혹은 색깔 렌즈는 선수가 착용할 수 있다.

8.4.1.3 전자 방아쇠

a) 모든 부품은 권총의 프레임 혹은 손잡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견고히 부착되어 있어야한다

b) 방아쇠는 권총을 파지 한 손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c) 방아쇠는 격발을 위해 누른다는 원리로 작동해야하며, 시퀀스(행동)에 딜레이가 없어야 한다(최대 딜레이 0.02초)

d) 장비검사 시 모든 부품이 포함된 상태로 받아야 한다.

e) 모든 부품이 장착된 권총은 해당 종목의 크기 및 무게를 다루는 규정에 따른다

f) 대회 중 권총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제외한 어떠한 장치에도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선수가 본인의 권총을 대회중 혹은 PET 때 연결할 경우 선수는 DSQ(실격)처리 된다.(전자식 혹은 케이블로 연결 모두 포함)

8.4.1.4 움직임 혹은 진동 감소 시스템

격발 전 적극적으로 권총 진동 혹은 움직임을 줄이거나 최소화시키는 모든 장치, 메커니즘 혹은 시스템은 금지되어 있다.

8.4.1.5 10m 권총

모든 장비가 부착된 권총은 측정 박스에 들어가야한다(8.12.b)

a) 한번에 1개의 연지탄(pellet)만 장전 할 수 있음. 10m 공기권총 경기에 5연발이 가능한 공기권총이 사용될 경우에도 한발의 연지탄만 장전할 수 있음

b) ported barrel(총구멍 근처 총열에 직접 구멍을 뚫어 가스 배출시키는 총열) 및 구멍이 뚫린 총열 부착물은 허용된다

c) 손잡이, 프레임 혹은 악세사리의 어떠한 부분도 손목에 닿아서는 안된다. heel rest(손꿈치 받침대)는 손잡이에서부터 90도 이상의 각도로 연장되어야 한다. 이는 heel rest(손꿈지 받침대) 손잡이에서 앞,뒤, 측면 모두에 적용된다.

d) 손목 측면에서 heel rest(손꿈치 받침대)의 끝은 30도 이상 혹은 손꿈치 받침대의 끝부분에서 더 수직으로 깎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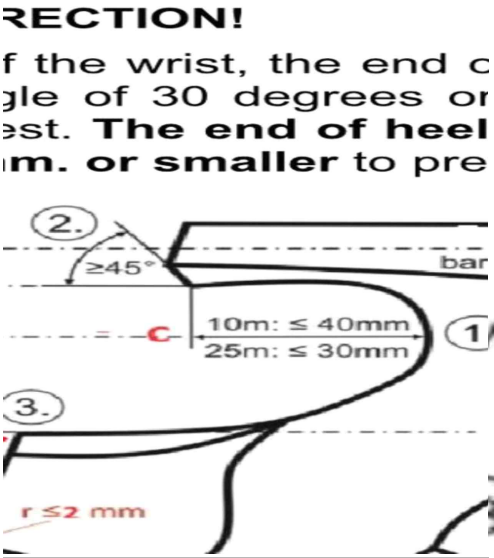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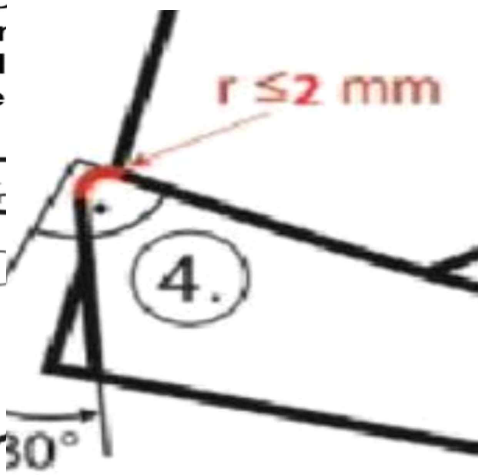

e) 추가적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위에 놓이는 프레임 혹은 손잡이의 후면부는 손잡이가 손등에 닿는 지점에서부터 손잡이의 가장 깊은 부분(C) 까지 40mm를 넘어서는 안된다. 손잡이의 후면부는 총열의 중심선으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45도 이상 경사지도록 깎여야 한다.

f) 곡률(D)은 총열 중심선으로부터 아래 방향이여야 하며 손을 감싸서는 안된다. 곡률은 총열의 중심선에서부터 손잡이 뒤편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평행하거나 더 위로 올라가서는 안된다.

g) 손꿈지 받침대/엄지받침대 포함하여 손잡이 혹은 프레임의 곡선 표면은 허용된다(권총의 세로방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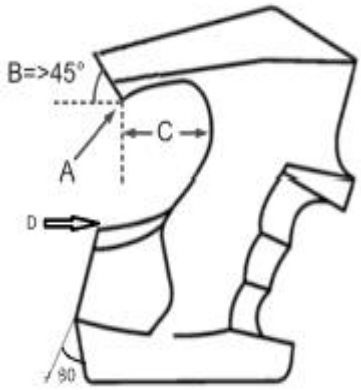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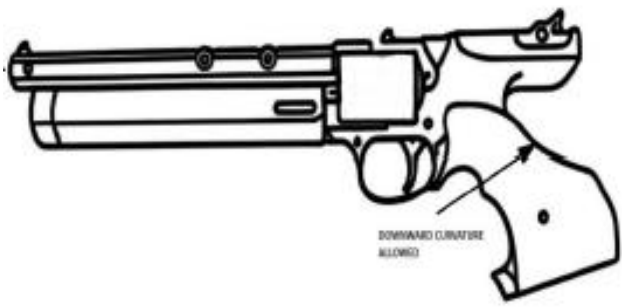

8.4.1.6 25m 권총

a) 모든 장비가 부착된 권총은 측정박스에 들어가야 한다(8.12)

b) 보정기(compensator), 소염기(muzzle brakes), 구멍 뚫린 총열(perforated barrels) 혹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든 장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c) 손잡이, 프레임 혹은 악세사리의 어떠한 부분도 손목에 닿아서는 안된다. heel rest(손꿈치 받침대)은 손잡이에서부터 90도 이하의 각도로 연장되어야 한다. 이는 heel rest(손꿈지 받침대) 손잡이에서 앞,뒤, 측면 모두에 적용된다.

d) 손목 측면에서 heel rest(손꿈치 받침대)의 끝은 30도 이상 혹은 손꿈치 받침대의 끝부분에서 더 수직으로 깎아야 한다.

e) 추가적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위에 놓이는 프레임 혹은 손잡이의 후면부는 손잡이가 손등에 닿는 지점에서부터 손잡이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30mm를 넘어서는 안된다. 손잡이의 후면부는 총열의 중심선으로부터 45도 이상 경사지도록 깎여야 한다.

f) 곡률(D)은 총열 중심선으로부터 아래 방향이여야 하며 손을 감싸서는 안된다. 곡률은 총열의 중심선에서부터 손잡이 뒤편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평행하거나 더 위로 올라가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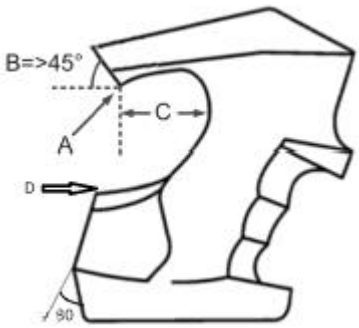

g) 손꿈지 받침대/엄지받침대 포함하여 손잡이 혹은 프레임의 곡선 표면은 허용된다(권총의 세로방향에서)

h) 탄피받이(Case Catchers)는 부착되었을 때 권총이 해당 규정들(높이 및 무게)에 부합할 경우 허용된다.

i) 구경(bore)의 중심선은 일반 사격 자세에서 파지하고 있는 손의 웹(web)(엄지와 검지 사이) 위를 지나쳐야 한다(그림참조)

j) 총열 길이는 아래와 같이 측정한다(그림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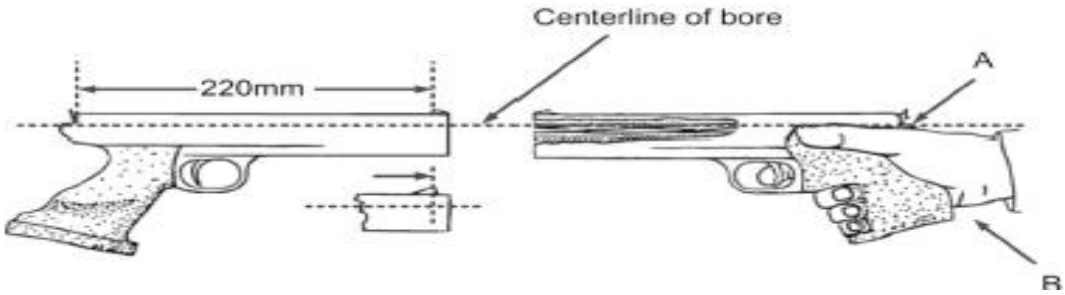

8.4.1.7

권총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이후 ISSF 장비검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선수들은 최대 5개의 승인된 권총 정보를 담은 카드를 발급 받을 것이다. 이 카드에는 권총의 총기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총기에 대한 유효한 카드가 없는 선수는 장비검사실에 와서 승인 받고 데이터베이스에 총기정보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 때 카드를 수정/발급 해 줄 것이다.

7.5.4.9 사격복 측정

사격복은 아래의 그림에 나온 세부사항에 맞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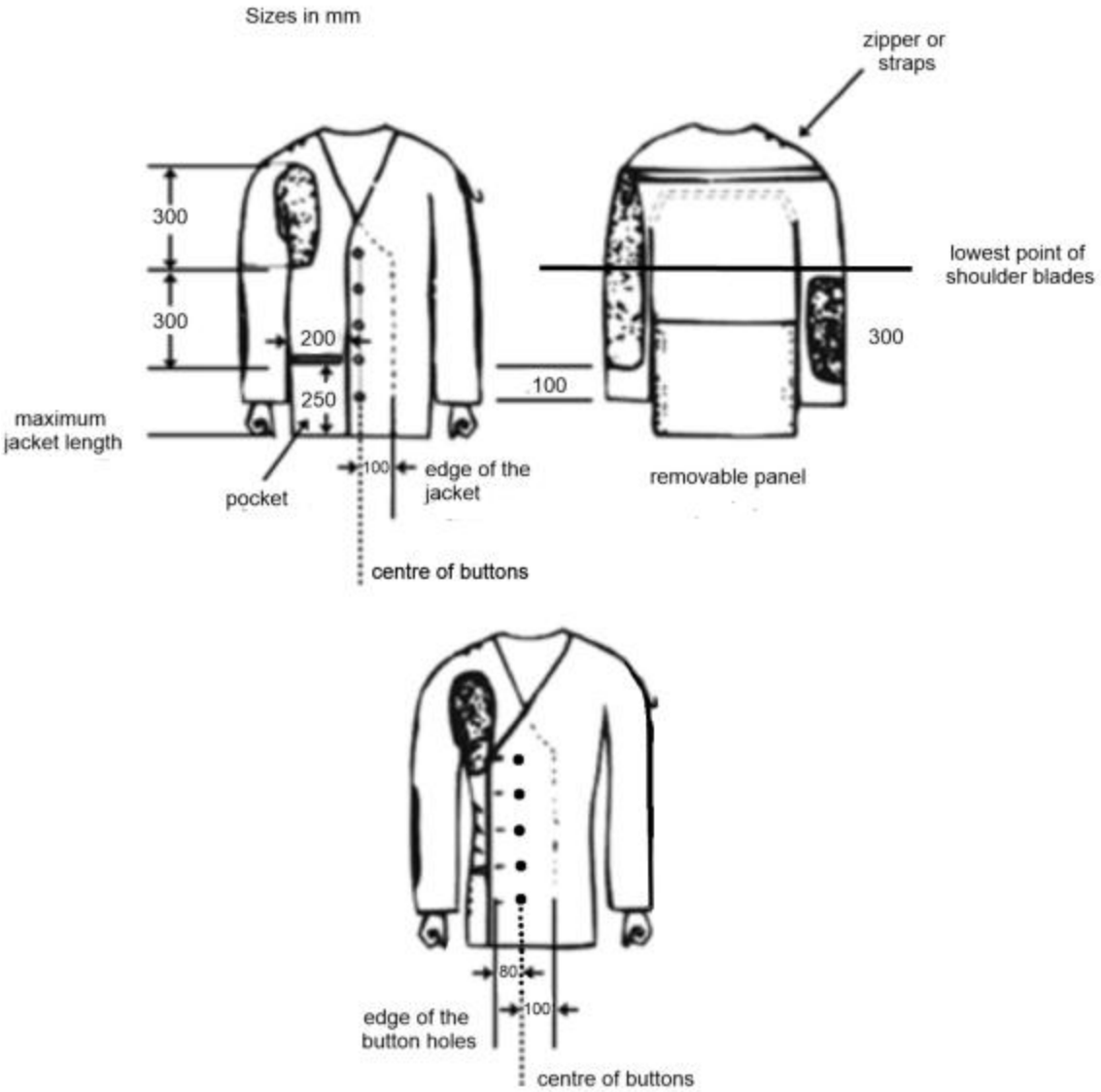

사격복의 아래 가장자리 부분은 선수가 양팔을 몸 옆으로 내리고 주먹을 쥐었을 때 쥔 주먹의 아랫부분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7.5.4.10 자켓 강도

선수가 자켓을 입고 있을 때, 팔을 제외하고 견갑골 최하단점 윗부분 전체 영역은 자켓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단단할 수 있다.
단 다음의 단서조항을 충족해야한다.

- 윗부분은 공식 강성측정 장치를 통하여 최대 시간 30초 이내에 3mm의 굴절이 되어야 한다.

- 견갑골 최하단점 아래 부분(소매 포함, 단일 두께)는 같은 테스트를 15초 이내에 통과하여야 한다.

강도 측정은 자켓 패널을 구성하는 소재의 겹과 상관없이 '단일' 겹의 패널에 적용된다. 즉, 접히지 않은 패널 두께가 최대 2.5mm 여야 한다(7.5.2.1 참조)

이러한 규정들은 자켓이 선수의 다리, 몸통, 또는 팔의 움직임을 고정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수 장치, 수단 또는 의류의 사용을 금하는 규칙인 6.7.4.2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지지력을 제공하지 않도록 자켓의 강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입사 자세에서 소총을 조준하고 있을 때 등 위쪽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보조가 필요한 것은 인정되며, 이는 자켓 위쪽에 더 높은 강성을 허용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자켓은 수선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새 자켓일 경우 요구되는 수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7.5.5 사격복 바지

7.5.5.1 강도

바지는 안감을 포함하여 평평한 면이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곳의 단일두께 2.5mm, 두겹 두께에서는 5mm를 넘어서는 안된다.
레이어의 개수(몇겹인지)는 허용된 두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이상 상관 없다.(이 규정 외 사항은 기존과 변경사항 없음)

7.5.5.4 사격복 바지는 남/여 소총 복사 경기와 3자세 경기 중 복사 경기 때 착용할 수 있다.

7.5.5.6 사격복 바지 강도

바지는 허용된 단일 두께가 2.5mm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안감을 포함하여 한 개의 레이어 이상의 소재를 포함할 수 있다.
사타구니 위쪽의 바지 윗부분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아래쪽 보다 더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사타구니 위쪽 부분은 공식 강도측정장치를 이용하여 검사 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대 30초 내에 굴절 3mm가 되어야 한다.
사타구니 아래 양쪽 다리 부분은 같은 테스트를 15초 내에 하여야 한다.

강도 측정은 바지 패널의 단일 두께에 적용되며 제조에 있어 사용된 레이어의 개수와 무관하다. 즉, 접히지 않은 패널의 최대 두께는 2.5mm이다(7.5.2.1 참조). 이에 대한 의도는 규정 7.5.4.10의 규정과 동일하며, 이는 규정 6.7.4.2에 맞추기 위하여 다리 부분의 강성을 줄이면서 입사 자세에서 조준하고 있을 때 등 아래부분 및 요추 부위의 부상 혹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지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7.5.6.1 장갑

솔기(Seams)와 연결 부위(Joints)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장갑의 앞면과 뒷면 재질을 합쳐 측정했을 때, 전체 두께가 16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선수가 내피 장갑(Lining glove)을 추가로 착용하는 경우, 이 내피 또한 전체 두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탄총 규정 번역

9.2.7 안구 및 청각 보호

a) 사선(firing line) 인근에 있는 모든 선수와 기타 인원은 귀마개, 헤드셋형 귀덮개 또는 그와 유사한 적절한 청각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b) 사격장(FOP) 내에서 선수와 코치는 어떠한 종류의 소리 증폭 또는 수신 장치가 포함된 청각 보호구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각 장애가 있는 선수는 심판 위원회(Jury)의 승인을 받아 소리 증폭 장치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기술 규칙 6.2.5 참조).

c) 모든 선수, 심판(Referees) 및 운영 요원은 파손 방지(shatterproof) 사격용 안경 또는 그와 유사한 안구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d) 만약 선수가 사격 위치(shooting station)에서 청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 담당 심판으로부터 경고(황색 카드)를 받습니다.

2차 위반(경기 또는 공식 연습 중): 담당 심판에 의해 1타점 감점(녹색 카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감점은 해당 선수의 첫 번째 본선 라운드에서 기록한 첫 번째 적중 타점에 적용됩니다.)

e) 만약 선수가 사격 위치에서 필수 사격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 담당 심판으로부터 경고(황색 카드)를 받습니다.

2차 위반(경기 또는 공식 연습 중): 담당 심판에 의해 1타점 감점(녹색 카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감점은 해당 선수의 첫 번째 본선 라운드에서 기록한 첫 번째 적중 타점에 적용됩니다.)

f) 심판위원장이 악천후(비, 안개 등)로 인해 착용이 어렵다고 선언하는 경우, 선수는 필수 사격용 안경 없이 사격할 수 있습니다.

9.4.2.1. 산탄총의 종류

a) ISSF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는 12게이지(12-gauge)를 초과하지 않는 구경의 모든 활강 산탄총(smoothbore shotgun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자동(semi-automatic) 및 펌프 액션(pump action) 산탄총은 제외됩니다. 12게이지보다 작은 구경의 산탄총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b) 산탄총에 카무플라주(국방색 미채/위장) 도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c) 안전상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산탄총의 모든 부품 및 액세서리(가스 배출구가 있는 총열(ported barrels), 개머리판, 앞덮개, 총열 및 교체형 초크 포함)는 공인된 제조업체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임의의 개조가 가해진 총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9.4.2.10.

개머리판 높이 제한 개머리판(조절식 또는 '몬테카를로' 유형)의 높이는 치크레스트(뺨 받침)의 가장 높은 지점부터 개머리판 하단 끝부분(butt plate toe)까지 측정했을 때 170mm(17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머리판의 일체형 부품이 아니면서 단순히 높이를 늘리기 위해 개머리판 하단에 수직으로 연장한 장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9.4.4. 마커 테이프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a) 사격 조끼의 모든 호주머니는 비워있어야 한다.

b) 선수는 곧게 서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팔을 몸 측면에서부터 지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팔 아래부분은 수평으로, 팔 위부분은 수직으로 두어야 한다.

c) 쥬리 2명이 확인해야한다. 한명의 쥬리는 선수 앞에 서서 선수가 어깨를 내렸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쥬리는 선수 옆에 서서 선수의 팔꿈치(엘보)가 힙 마크 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선수는 어깨에 긴장을 풀고 팔을 90도로 꺾을 수 있어야한다.

d) 담당 쥬리는 스키트 마커 테이프가 팔꿈치 포인트 아래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다.

e) ISSF 씰은 마커테이프의 끝 및 마크 앞부분의 작은 속이 빈 리벳에 위치하여야 한다.

f) 모든 불법 마커는 선수가 경기에 뛰는 것이 승인 되기 전 정확히 위치하여야 하며 재검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g) 스키트 사격 조끼는 테이프, 조임끈, 고무줄 등 자켓의 핏을 조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h) 스키트 사격복은 어떠한 종류의 신축성 소재로도 만들어질 수 없다.
신축성 소재로 만들어진 스키트 사격복은 금지된다.